

[별표 1]

## 시설 사용료 (제3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1일 / 원, 명)

시 설 별	사용기준 (1동당)	비 수 기		성 수 기 (4월~6월/ 9월~11월)	이용인원	
		평 일	주 공 휴 일			
카라반	6인용	1박 2일 사용 시	100,000	120,000	160,000	6
	4인용	1박 2일 사용 시	65,000	80,000	105,000	4
	사이트	1박 2일 사용 시	30,000	35,000	40,000	6
글 램 핑		1박 2일 사용 시	110,000	140,000	160,000	4
이 글 루		1박 2일 사용 시	55,000	65,000	85,000	4
오토캠핑		1박 2일 사용 시	25,000	33,000	40,000	6
일반캠핑		1박 2일 사용 시	20,000	28,000	33,000	6

※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액 : 5천원 (감면대상자는 제외)

※ 시설 이용시간

1. 숙박시설: 당일 14:00 ~ 다음 날 11:00
2. 야영시설: 당일 14:00 ~ 다음 날 12:00

[별표 2]

## 우선 예약대상 시설 및 시설 사용료 [제3조제1항 관련]

(단위 : 1일 / 원, 명)

시 설 별	사용기준 (1등당)	비 수 기		성 수 기 (4월~6월/ 9월~11월)	이용인원	
		평 일	주 공 휴 일			
카라반	6인용	1박 2일 사용 시	200,000	220,000	260,000	6
	4인용	1박 2일 사용 시	165,000	180,000	205,000	4
글 램 핑		1박 2일 사용 시	210,000	240,000	260,000	4

※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액 : 100,000원 (감면대상자는 제외)

※ 시설 이용시간

1. 숙박시설: 당일 14:00 ~ 다음 날 11:00
2. 야영시설: 당일 14:00 ~ 다음 날 12:00